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2026년 대전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가입

나. 대상차량 : 보험가입차량 99대(붙임 ‘보험가입대상 목록’ 참조)

다. 보험가입기간 : 2026. 9. 5. 24:00 ~ 2027. 9. 5. 24:00(1년)

라. 보험가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과업지시서 및 자동차 보험가입 대상 현황 등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여자에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 : 금54,070,140원 (부가가치세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업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제출,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8. 20.(목) 10:00 ~ 8. 25.(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8. 25.(화) 11:00

다. 개찰장소: 대전광역시 동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재 견적서 제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 견적서 제출을 실시 [재견적서 제출을 실시할 경우 개찰 일부더 실시될 예정이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음을 유의바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단독이행만 가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국내 손해보험협회 정회원사로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업(자동차 보험, 업종코드:3828)**을 영위하는 업체(본사 조직 또는 본사에서 단독으로 위임 받은 조직으로서 보험회사별 1개 조직만 입찰 참가 가능)로서 **공고일 현재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1순위 업체는 보험금 지급여력비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또는 조건 미충족시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위임받은 조직일 경우 계약 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 무효로 처리함

※ 발주기관(계약담당자)는 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다.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 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 통과안**을 전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e-mail(sc01400@korea.kr)로 제출 후 접수 여부는 반드시 사업담당자(동구청 회계정보과 ☎042-251-4154)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라. 전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바. 본 전적 제출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소속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등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소액수의 전적공고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전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특히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공고문 4. 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입찰유의서 등 입찰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입찰(전적제출)이 있으면 가. 의 입찰(전적제출)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③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전적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이 입찰(전적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다.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전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천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천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전적가격(입찰금액)을 88%이상으로 하여 전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전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이하 ‘수의계약 운영요령’ 이라고 함)의 수의계약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전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청렴서약제 적용

가.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업체의 청렴서약 관련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2, 3】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개찰 후 입찰(견적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각서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초안송신,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우리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 인지세 납부 등을 한 후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대금청구액(부가세 미포함)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관련 해석 및 집행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우리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설명서·과업지시서 등 입찰서(견적서)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3. 문의사항 연락처

- 가. 보험료 산출기초, 과업지시서 등에 대한 문의 : 동구 회계정보과 / ☎ 042-251-4156
-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동구 회계정보과 / ☎ 042-251-4154
-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전자 입찰 등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8. 19.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관

【붙임1】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아니오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동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 동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동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